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37

발의연월일: 2024. 10. 31.

발 의 자:이용우·김정호·박홍배

김태선 · 김남근 · 박해철

이원택 · 용혜인 · 민병덕

박정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시설의 가동 중지 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된 무상할당량 대비 50%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환경부가 할당대상업체에게 지급한 무상할당량을 취소할 수 있음.

이 때문에 포스코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시설 가동 중지로 배출량이 줄어들었지만, 법령에 따른 감소량이 50% 미만이었기 때문에, 환경부는 해당 배출권을 취소할 수가 없었고, 결과적으로 포스코는 정부로부터 받은 '공짜 배출권'을 시장에 팔아 막대한 횡재이익을 낼 수 있었음. 이로 인한 포스코는 무상할당 배출권 판매로 311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음.

이에, 시설의 가동중지·정지·페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 대비 100 분의 15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, 해당 배출권의 잔여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).

법률 제 호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에 제3호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"를 "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의 100분의 15이상으로 감소한 경우"로 한다. 제1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항제3호에 따른 할당량 취소량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그 사업 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이 · 제17조(배출권 할당의 취소) ① 제17조(배출권 할당의 취소) ①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1. · 2. (현행과 같음) 1. • 2. (생 략) 3. 시설의 가동중지 · 정지 · 폐 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----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중에 서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할당량의 100분의 15이 상으로 감소한 경우 4. • 5. (생략) 4. • 5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생 략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----.. 다만,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단서 신 제3호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의 설> 취소량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그 사 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그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수량 으로 한다.